

충남 이주·동포국 신설 방안 검토

윤 향 희

충남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 책임연구원
yinxiangxi@cni.re.kr

충남 이주·동포국 신설은 외국인들과의 포용과 충남의 인구 증가의 한 요인을 차지할 수 있으며 충남의 다문화조례와 함께 재외동포의 조례 개정을 추가하고 충남의 이주·동포국의 구성과 역할 및 이주·동포국의 설립효과를 제시하여 충남의 양극화극복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음

CONTENTS

1. 서론
2. 충남거주 외국인 체류자격별 현황
3. 이주·동포국 신설을 위한 조례제정
4. 이주·동포국의 구성과 역할
5. 이주·동포국 설립 효과
6. 결론

요약

- 외국인 유입이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의 해결의 대안으로 충남으로의 외국인 인구 유입으로 외국인의 노동력 확보를 위한 외국인 통합정책 기구로 독립된 이주·동포국 필요
- 이를 위해 충남 이주·동포국 신설을 위한 조례를 제정토하여 충남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주민 지원에 대한 재정비 요구
- 이주·동포국은 충남 조직도 국제에 '이주·동포국'을 별도의 국으로 독립 설치하여 내부조직으로 외국인주민 체류관리, 지원, 교육, 노동정책, 및 특별 관리로 구성되어 그에 맞는 역할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이와 관련된 근거규정 마련
- 이주·동포국의 설립으로 현행 외국인 관련 부처의 중복 지원 등의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으며 충남체류 외국인의 관리와 지원이 용이하며 충남으로의 외국인 유입 증가와 외국인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음
- 충남 이주·동포국을 통한 충남 체류 외국인 주민의 노동력 활용으로 충남의 경제 기여를 높일 수 있음
- 이로 인해 외국인의 충남정착 통합을 위한 컨트롤타워 확립과 외국인의 체계적인 지원, 흠결된 교육에 대한 보완과 무엇보다 외국인의 입출국 관리와 외국인 노동력확보에 용이함
- 이러한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수한 지위를 부여하여야 함

01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외국인 유입이 저출생·고령화로 노동력 해결을 위한 대안
 - 한국의 2020년 0.84명이며, 충남은 1.03명으로 저출생으로 충남의 인구는 점점 줄어들
 - 충남의 2021년 2월 기준 인구는 2,119,542명으로 전월대비 증감은 -0.01로 -295명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년대비 -0.07%로 -1,487명으로 나타남
 - 이는 저출생으로 나타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으며 타 지역으로의 인구 유출이라고 볼 수 있음
 - 충남의 5세 이하는 71,610명이며, 65세 고령인구는 408,747명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는 10세 이하 9.05%를 차지하는 반면 60세 이상은 26.99로 10세 이하에 비해 2.98배를 차지하고 있으며 20세 이하는 17.57%로
 - 이처럼 충남의 출생률은 낮아지고 있으며 고령화의 증가로 충남 안에서의 노동인구 감소
 - 노동력 공급부족과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수급의 불균형으로 노동생산성 저하에 따른 노동인구 유입으로 외국인력 도입 확대
- 외국인 노동력 확보를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외국인 통합 정책기구가 필요함
 - 국가 생존의 이민정책을 적극 펼쳐야 하며 외국인의 한국 체류를 위한 지원과 관리의 영역으로 볼 수 있음
 - 국가 간 인적 이동이 과거에 비해 늘어났으며 이는 국가 간 이동이 편리해졌음을 의미함
 - 특히 한국의 경제 수준과 저출생·더불어 생산직 기피현상 등에서 나타나는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을 수용할 수밖에 없음
 - 충남은 외국 인력을 필요로 하는 농업과 제조업이 타 시도에 비하여 높은 편이며 생산 인구

감소로 인해 외국 인력 충원이 절실함

- 외국인의 지속적인 증가로 한국 체류 외국인의 한국적응을 위한 사회, 문화, 교육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대한 출입국 등의 관리가 요구됨
- 따라서 충남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충남 안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회통합정책이 추진되어야 함
- 이러한 목적 등으로 충남에 이주·동포국의 신설이 요구됨

● 인구 유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독립된 이주·동포국 필요

- 충남 체류 외국인은 2020년 12월 기준 69,622명으로 2019년에 비해 2,961명이 증가함
- 충남 체류 외국인은 결혼이주자,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조선족, 고려인, 북한이탈 가족 등이 다문화로 분류되고 있음
- 충남의 인구 저하 해결방안으로 충남에 거주 중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충남에 정착할 수 있는 독자적인 방안 마련이 요구됨
- 다양한 계층의 외국인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충남에서의 정착을 위한 전담기구가 필요함
- 충남 이주·동포국은 충남만의 독자적인 계획과 관리로 외국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음
- 따라서 충남 이주·동포국은 충남 체류 외국인들의 입·출입 관리와 충남 안에서의 체계적인 관리 용이함

● 저출생·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가용가능 확장

- 충남 유입확장을 위한 노력으로 외국인의 체류 범위 확대와 동반입국 범위 확대
- 대한민국과 혈연, 동포, 자발적 인연의 체류범위 확대
- 충남 체류 외국인들의 유입확장을 위한 가족 유입 확장 필요
- 재외동포, 외국인근로자, 유학생, 결혼이주자의 가족동반 허용

● 충남 체류 외국인지원을 위한 조례제정

- 충남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요구됨
-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보완과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조례 제정 필요함

02 충남거주 외국인체류자격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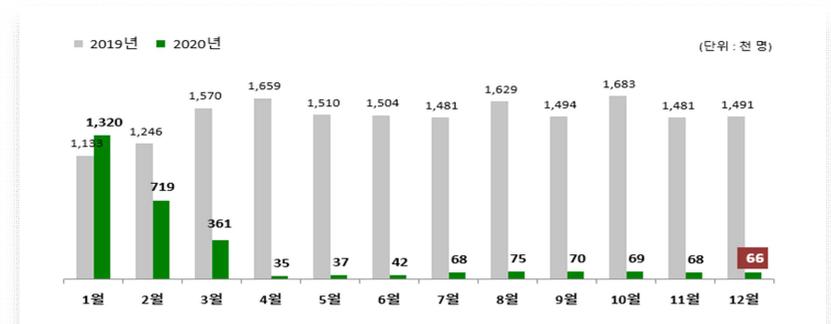
● 한국체류 외국인인 2020년 말 한국체류 외국인인 2,036,075명으로 2019년 말 2,524,656명보다 488,581명 감소함.

- 2019년 11월 2,059,900명보다 23,825명으로 1.2% 감소
- 감소 원인으로는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한국 체류 외국인의 본국으로의 이주와 한국 입국을 재고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영향을 받음

● 2019~2020년 외국인 입국자 증감

-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2020년 4월 외국인 인구 증가는 35명이며 4월부터 12월까지의 외국인 인의 인구 증가는 두 자리 수를 나타내고 있음

[그림 1] 외국인입국자 증감 추이(2019~2020)



출처 :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월보(2020년 12월)

● 충남 등록 외국인 지역별 현황(2020년)

- 충남 체류 등록 외국인은 천안, 아산, 당진, 서산, 논산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지역에는 공단 등의 밀집 지역으로 외국인들의 체류현황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또한, 충남은 농업과 수산업 분야에서 외국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음

<표 1> 충남 등록 외국인 지역별 현황

충남 (시도)	인 구 수		
	총계	남	여
충청남도	64,546	38,828	25,718
천안시	18,188	10,372	7,816
아산시	16,972	10,299	6,673
당진시	5,450	3,484	1,966
서산시	4,078	2,269	1,809
논산시	3,865	2,067	1,798
보령시	2,859	2,221	638
금산군	2,148	1,133	1,015
예산군	2,028	1,404	624
태안군	1,384	1,009	375
홍성군	2,356	1,574	782
공주시	1,991	1,032	959
서천군	1,277	951	326
부여군	1,118	595	523
청양군	623	315	308
계룡시	209	103	106

출처 : 법무부, 지역별 외국인 현황(2020년 12월)

● 충남 외국인 인구 변동사항(2016~2020)

- 최근 5년간 충남 외국인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2020년 충남 외국인 인구는 2019년에 비해 6,129명 감소함
- 이는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가별 이동에 대한 제한으로 나타남

<표 2> 충남 등록 외국인 인구변동 추이

년도 (12월말)	충남체류 외국인 수	증감인구
2016	60,303	
2017	64,155	3,852
2018	68,234	4,079
2019	70,675	2,441
2020	64,546	-6,129

출처 :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월보(2016년 12월, 2017년 12월, 2018년 12월, 2019년 12월, 2020년 12월)

● 충남 체류 외국인 자격별 현황(2020년 6월)

- 최근 5년간 충남 외국인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2020년 충남 외국인 인구는 2019년에 비해 현저히 감소함

<표 3> 충남 체류 외국인 자격별 현황

지역	체 류 자 격								
	비전문 취업	결혼이 주	영주	유학	일반연 수	신원취 업	방문취 업	특정활 동	방문동 거
천안시	4,196	1,978	2,268	1,765	1,213	1	2,567	188	1,921
아산시	3,839	1,314	1,319	1,672	409	307	3,904	87	2,727
당진시	1,867	651	608	121	14	0	826	82	634
서산시	662	543	729	434	63	8	605	20	478
논산시	1,903	413	142	104	137	0	260	19	333
보령시	1,244	309	123	77	2	664	84	23	128
금산군	915	208	59	479	206	0	49	18	116
예산군	1,043	263	182	10	1	7	168	14	191
태안군	383	181	84	8	1	460	83	14	96
홍성군	1,087	287	160	60	93	21	177	0	245
공주시	619	346	128	284	103	0	80	8	206
서천군	632	161	57	0	3	0	17	4	53
부여군	595	238	48	4	0	0	31	3	113
청양군	85	142	24	1	0	0	26	2	85
계룡시	49	47	25	1	2	0	11	6	31
합계	19,119	6,811	5,956	5,020	2,247	1,468	8,888	489	7,357

출처 : 법무부, 등록 외국인현황(2020년 6월)

- 충남 체류 외국인 중 비전문 취업이 19,119명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방문취업이 8,888명으로 나타나고 있음
- 체류자격 방문취업자는 주로 중국 및 구소련 지역에 거주하는 만 25세 이상의 외국 국적 동포가 한국에서 정해진 기간 동안 취업을 하는 자들임
- 충남체류 결혼이주자는 6,811명으로 천안, 아산, 당진, 서산, 논산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또한 충남체류 영주는 2,268명으로 천안, 아산, 예산, 서산, 당진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방문동거의 자격으로 충남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7,357명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방문 동거는 한국에서의 취업활동이 제한되고 있고 초청자의 동거를 뜻함
- 체류자격 중 선원취업은 아산, 보령, 태안, 홍성에서의 거주가 확연히 나타나고 있음

<표 3> 충남 체류 외국인 자격별 현황

지역	체류자격								
	비전문 취업	결혼이 주	영주	유학	일반연 수	선원취 업	방문취 업	특정활 동	방문동 거
천안시	4,196	1,978	2,268	1,765	1,213	1	2,567	188	1,921
아산시	3,839	1,314	1,319	1,672	409	307	3,904	87	2,727
당진시	1,867	651	608	121	14	0	826	82	634
서산시	662	543	729	434	63	8	605	20	478
논산시	1,903	413	142	104	137	0	260	19	333
보령시	1,244	309	123	77	2	664	84	23	128
금산군	915	208	59	479	206	0	49	18	116
예산군	1,043	263	182	10	1	7	168	14	191
태안군	383	181	84	8	1	460	83	14	96
홍성군	1,087	287	160	60	93	21	177	0	245
공주시	619	346	128	284	103	0	80	8	206
서천군	632	161	57	0	3	0	17	4	53
부여군	595	238	48	4	0	0	31	3	113
청양군	85	142	24	1	0	0	26	2	85
계룡시	49	47	25	1	2	0	11	6	31
합계	19,119	6,811	5,956	5,020	2,247	1,468	8,888	489	7,357

출처 : 법무부, 등록 외국인현황(2020년 6월)

● 충남 체류 재외동포 현황(2020년 12월)

- 충남의 재외동포 수는 2020년 24,914명으로 2019년 24,460명에 비하여 454명이 증가하였음
- 이는 재외동포는 가족단위의 구성으로 이주하기 때문에 증가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음

<표 4> 충남 체류 재외동포 현황

충남 (시도)	재외동포수		
	총계	남	여
충청남도	24,914	13,967	10,947
천안시	8,492	4,630	3,862
아산시	9,448	5,320	4,128
당진시	2,265	1,411	854
서산시	1,704	992	712
홍성군	635	366	269
예산군	613	343	270
논산시	469	266	203
공주시	296	164	132
보령시	290	118	172
태안군	214	114	100
금산군	134	81	53
부여군	108	59	49
청양군	109	43	66
계룡시	70	25	45
서천군	67	35	32

출처 : 법무부, 외국국적동포 거소 신고 현황, 계구성(2020년 12월)

03 이주·동포국 신설을 위한 조례제정 검토

- 충남에 이주·동포국을 신설하기 위한 노력으로 현재 외국인 관련 조례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충남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지원에 대한 재정비 요구됨
 -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에는 계속되는 개정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개정만 이루어지고 있음
 - 최근 2020년 10월 22일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도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의 범위 개정이 이루어졌음
 - 개정 이유로는 저소득층 다문화가족의 주거환경개선과 결혼이민자의 모국방문지원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의 안락한 삶을 도모하고자 개정함
 - 주요 내용으로는 저소득 다문화가족의 정의와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의 범위를 개정함
 -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짐
 - 충남 체류 중인 외국인주민(외국인노동자, 유학생, 재외동포 등)에 대한 지원 조례가 차이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함
 - 따라서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의 개정에 충남체류 외국인주민과 그들의 가족에 대한 지원 조례 등이 함께 개정되어야 할 것임
- 충남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비전문취업, 방문취업, 방문동거, 외국인 유학과 일반연수, 결혼이민, 영주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 충남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중 결혼이민은 2020년 6,811명임
 - 2020년 충남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비전문취업이 19,119명, 방문취업 8,888명, 방문동거 7,357명으로 결혼이민보다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음
 - 유학과 일반연수를 포함하면 7,267명, 영주자격 5,956명이 충남에 체류하고 있으며 충남에 체류 중인 재외동포는 24,914명임

-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의 구성
 -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의 구성은 4장 22조로 이루어져있음
 - 1장은 총칙으로 목적, 용어의 정의,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도지사의 책무, 지원계획수립, 지원대상, 지원의 범위, 업무의 사전 협의·조정으로 이루어져 있음
 - 2장은 다문화정책협의회로 협의회 설치, 협의회 기능, 위원장, 회의, 의견청취, 위원의 수단, 위원의 위촉해제로 구성되어 있음
 - 3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정책참여로 자문회의의 설치, 자문회의의 기능, 회의소집,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정책참여와 구성되어 있음
 - 4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시책 사업추진 등으로 시책사업 추진, 외국인주민센터 등의 지정, 업무의 위탁,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에 대한 검토
 -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의 분리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등에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주로 결혼이민으로 이루어진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외국인주민 자녀에 대한 지원의 범위는 외국인주민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다문화가족의 자녀에 해당됨
 -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은 도 행정에 참여할 수 없음
 - 외국인주민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비율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고려인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센터는 없음
 - 외국인주민(외국인 노동자, 유학생, 고려인)자녀와 다문화가족 자녀의 지원에 대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

<표 5>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검토

충남 조례	외국인 주민	다문화가족
제3조 ¹⁾ ② ²⁾	외국인주민 도 행정에 참여하고 있지 않음	다문화가족 도 행정에 참여하고 있지 않음
제4조 ³⁾ ② 4)	외국인 노동자센터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대해 매우 부족 고려인문화센터와 유학생들에 대한 전담부서 없음	15개 시·군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제5조 ⁵⁾ ②의 2 ⁶⁾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 없음	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제5조 ②의 4 ⁷⁾	외국인 주민(노동자, 유학생,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 사업을 위한 재원 미비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제7조 ⁸⁾ ①의 4 ⁹⁾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 없음	다문화가족에 대한 각종 문화·체육행사 개최
제7조 ② ¹⁰⁾	외국인 주민에 대하여 해당되지 않음	주로 결혼이민자의 한국 적응을 위한 과정 및 가족과의 관계에 대한 지원으로 이루어져 있음
제7조 ③ ¹¹⁾	명명은 외국인주민 자녀 지원이지만 외국인근로자, 유학생, 재외동포의 자녀에 대한 지원 부족	결혼이주로 이루어진 다문화가족의 자녀의 지원 사항임
제19조 ¹²⁾ ① ¹³⁾	영주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자만 해당	한국 국적을 취득한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해당
제19조 ② ¹⁴⁾	외국인외의 봉사활동이 정책참여라고 보기 어려움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결혼이민자의 봉사활동이 정책참여라고 보기 어려움

04 이주·동포국의 구성과 역할

1. 이주·동포국의 구성

● 설치위계

- 충남도의 조직도 국제에 “이주·동포국”의 별도의 국으로 독립 설치
- 외국인주민, 결혼이주자, 유학생, 재외동포와 그 밖의 충남체류 외국인 관리
- 충남 체류 모든 외국인의 유입, 정주, 재외동포 입국, 유학 등의 체류와 교육담당
- 충남 체류 외국인의 근로현장 확장 및 근로기준 마련
- 충남체류 외국인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관리 및 안내
- 충남체류 외국인의 복지지원서비스 근거 마련

● 이주·동포국 내부조직



- 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 2) 충청남도지사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도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3) 도지사의 책무
- 4) 도지사는 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정책을 전담하는 부서 설치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수요 보전방안을 강구 할 수 있다.
- 5) 지원계획 수립
- 6)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시책에 관한 사항. 가. 결혼이민자 등의 안정적 정착 지원 나. 결혼이민자 등의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 다. 결혼이민자 등의 인권 보호 라. 다문화가족 내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 마.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지원
- 7)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 8) 지원의 범위
- 9) 각종 문화·체육 행사의 개최
- 10)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범위
- 11) 외국인주민 자녀에 대한 지원범위
- 1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정책 참여
- 13) 도지사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4) 도지사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 이주·동포국의 역할

- 외국인주민 체류 관리과 : 외국인의 충남 체류관리, 충남체류 외국인의 입출국관리, 외국인체류자격별 분류, 국가별 외국인 유입 등에 관한 체류 관리
- 외국인 주민 지원과 : 충남체류를 위한 생활지원, 주거복지, 의료복지 지원 등
- 외국인 교육과: 한국사회적응 교육, 한국문화교육, 한국어교육, 이종언어교육, 자녀교육관련 교육 등
- 외국인 노동정책과 : 외국인의 일자리획득, 재취업의 기회 제공 확대, 근로정보제공 등)
- 외국인 특별 관리과: 충남 유입 외국인들의 갈등 등으로 발생하는 문제 등 관리

● 충남체류 외국인 대상 조례 제정

- 충남 이주·동포국과 관련된 근거규정(조례) 마련
- 충남체류 외국인이 충남에 체류하는 동안 충남의 도민으로서의 권리부여

2. 이주·동포국의 역할

● 이주·동포국의 역할



● 충남 이주·동포국의 지원

- 충남 이주·동포국의 분야별 지원기관 명시
- 충남 체류 외국인의 통합적 관리시스템 적용

3. 이주·동포국의 분야별 지원

● 충남체류 외국인의 입출국 관리

- 충남체류 외국인 체류자격별 입출국 관리
- 충남체류 외국인 초청 안내
- 충남체류 외국인 증명서 발급
- 지역 간 이동관리 지원
- 외국인 정보 조회서비스 지원

● 충남체류 외국인의 체류관리

- 충남체류 외국인의 체류지, 직장 변경 등의 등록사항 변경 신고
- 충남체류 외국인의 비자 변경 관리
- 충남체류 등록 및 지역체류 관리 민원 상담
- 외국인 주민에 대한 국적 취득 기간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의 허가 부여

● 충남체류 외국인의 복지지원관리

- 외국인 주민 정착지원
- 사회보험 서비스(사회복지, 공공부조, 사회보험서비스)확장지원
- 의료기관 지원서비스

● 충남체류 외국인의 교육관리

- 기초 법 및 규범 교육

- 한국에서의 생활적응 교육
- 충남체류 외국인의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기초사항으로 한국어 교육
- 충남 체류 외국인을 위한 한국사회이해교육, 한국문화교육,
- 충남체류 결혼이민자를 위한 부모교육, 자녀교육, 가족교육(남편, 시부모 등) 등
- 외국인 상담관리 지원

● 충남체류 외국인의 노동관리

- 충남 체류 외국인의 근로를 위한 외국인 고용허가제 소개
- 고용절차, 체류자격 별 고용 허가 업종 안내, 노동권터 안내, 체류자격 변경에 관한 점수제 배정 관리
- 충남 기업의 외국인 고용을 위한 사업장현황 및 고용 등에 관한 조회
- 취업활동 유무 외국인의 노동관리
- 충남의 노동기준을 정하여 불법 활동이 아닌 노동시간 부여 확대
- 외국인 고용에 관한 민원신청서비스 제공
- 충남 유입 계절 근로자 관리

● 충남체류 외국인의 기초 법 및 규범

- 내국인과 같은 법 적용
- 기초절서 확립을 위한 규범 마련

● 충남체류 외국인 특별관리

- 충남 체류 외국인의 불법 체류 시 관리 및 처우 지원
- 충남 체류 결혼이민자의 이혼 등으로 발생하는 문제해결 및 지원
- 체류자격 외 활동 영역 확대 지원
- 한국 체류를 위한 국적 취득 관리 및 지원

05 이주·동포국 설립 효과

1. 현행 외국인 관련 부처의 역할 및 지원

● 현행 근거법령에 따른 외국인 정책 및 기능

- 현재 한국체류 외국인 관리와 지원기관은 각 부처별 지원과 중복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각지대도 형성되고 있음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의 주관부처와 기능

<표 6> 외국인 정책관련 조직, 법령, 주관부처 및 기능

위원회	소속 (위원장,간사)	근거법령	주관부처	기능
외국인정책위원회	국무총리실 (국무총리, 법무부)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법무부	외국인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조정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국무총리실 (국무총리실장, 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관련 기본계획 수립, 외국인 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 외국인 송출국 지정 및 해지 등 심의·의결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국무총리실 (국무총리,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법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과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사항 심의·조정
제외동포정책위원회	국무총리실 (국무총리, 외교부)	제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외교부	제외동포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

출처 : 이남철(2020), 국제이주와 외국인 노동정책, p. 375.

- 근거법령에 따른 주관부처에서 외국인 정책은 기관별 기능과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 중복지원과 누락이 발생하는 우려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음

● 현행 중앙행정기관의 외국인 정책 추진 영역

<표 7> 외국인정책 추진 중앙행정기관 및 정책 영역

부처	정책영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 본부)	외국인정책 총괄, 비자발급, 국적·체류관리, 불법체류자 단속, 난민정책, 외국국적 동포 정책, 이민자 통합정책, 영주 귀화정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외 과학기술 전문 인력, ICT전문인력 유치 및 활용정책, 외국인을 위한 방송서비스 지원정책
외교부	비자발급, 재외동포 정책
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운영, 결혼이민자 및 이민배경 자녀 직업 교육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
문화체육관광부	외국인 관광객 유치, 다문화사회 문화적 지원, 문화환경 조성 지원, 이민자 문화활동 지원 및 관련정책, 재외문화원, 국제문화교류관광정책
산업통상자원부	해외 전문인력 유치, 유학생 취업연계, 외국인 투자관련 업무
교육부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 이민배경 자녀교육, 이중언어교육환경 조성, 학교 문화 다양성 이해역량강화
보건복지부	의료관광정책, 외국인 의료지원사업, 난민 인정자 기초생활 보장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주민 정착지원

출처 : 이남철(2020), 국제이주와 외국인 노동정책, p. 376.

- 법제도 상 위원회 및 기본계획, 시행계획 사이의 기능과 업무가 비교적 잘 구분되어 있음
- 그러나 실행단계에서 실질적인 구분이 명백하지 않음
- 또한 기능과 업무가 구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처별 중복 관련 지원에 관한 업무가 중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현행 중앙행정기관의 외국인 정책 추진 방향 및 개선 사항
 - 중복지원에 대한 수혜 개선
 - 한국체류 외국인 지원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

2. 충남 이주·동포국의 설립 효과

- 충남 체류 외국인의 관리와 지원
 - 충남지역 이주·동포국 설립으로 충남체류 외국인의 관리와 지원이 용이함
 - 충남 체류 외국인주민의 정착 지원 및 관리의 사각지대 해소
- 충남지역 이주외국인 증가
 - 입국에 대한 정보가 집중되고 다양화됨으로써 한국으로의 유입 촉진 효과
 - 외국인주민의 충남으로의 입국 관리 및 체류 관리로 체계적 관리
 - 외국인의 편의 입국 가능으로 유입인구 증가
 - 충남의 외국인 인구 유입으로 노동 인구 증가
 -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해소 효과
- 충남으로 유입된 외국인 관리의 효율성 증대
 - 독립된 국으로 하나의 계획 수립
 - 외국인관리에 있어서 일관된 시행
 - 독립된 기파에 집중된 정보는 외국인간의 소통과 역할 증진
- 충남 이주·동포국을 통한 충남 체류 외국인주민의 노동력 활용으로 충남의 경제기여 증가
 - 외국인의 일자리 정책은 장기적으로 수립 가능
 - 일관된 계획 실행이 가능
 - 정주된 일자리 정보를 통하여 일자리 획득

06 결론

1. 충남 이주·동포국 신설 방안 검토 결과

- 외국인의 충남 정착을 통합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확립
 - 외국인주민 확장으로 충남의 유입인구 확대
 - 기존의 한국체류 외국인 외 체류 외국인의 확장
 - 결혼이민자,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
 - 외국인 유입정책으로 충남 체류 외국인 증가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충남의 노동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의 유입으로 충남 인구 증대와 노동력 확보
- 충남 여건에 맞는 체계적인 지원
 - 한국 체류 외국인에 대한 부처별 중복지원에 따른 사각지대 해소
 - 외교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의 각기 다른 지원에 따른 충남의 정책 지원 강화
 - 충남에 맞는 맞춤형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따른 취업지원
 -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사회복지 지원 강화
 - 충남 체류 내국인과 외국인과의 충남지역사회 융화를 위한 노력
- 흠결된 교육에 대한 보완
 - 외국인주민의 충남 정착을 위한 노력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
 - 충남 체류를 위한 노력으로 교육에 대한 보완 가능

- 충남 체류 외국인의 한국 사회 조기적응 프로그램 강화
- 충남에서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한 노력으로 가족지원서비스 강화(부부교육, 자녀교육 등의 노력 지원)

- 충남 외국인 입출국 관리에 용이
 - 충남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종합적 관리
 - 충남체류 외국인의 불법체류 및 범죄율 감소
- 외국인 노동력 확보에 용이
 - 외국인의 고용과 노동 등에 관한 관리
 - 충남의 지역적 영향에 따른 시기별 노동력 확보
 - 숙련 노동인력 확보에 따른 전문 노동인력 확대
- 충남체류 외국인 증가에 따른 경제 활력 제고와 공존을 위한 노력
 - 국민과 외국인이 함께 빛어나가야 할 공존과 통합
 - 재한외국인과 공감대 속 경제 활성화 사회통합
 - 인구 감소에 따른 잠재 성장률 하락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
 - 취업·사업 비자의 체류 자격 외국인과 우수인재 적극 유치
 - 숙련기능인력 제도 확대
 - 조기적응 사회통합프로그램 강화
 -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 노력

2. 충남 이주·동포국 설립의 한계 및 방안

- 연구의 한계점
 -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법은 상위법인 중앙정부차원에서의 규율을 따르고 있음

- 충남이 이민·동포국을 신설하여 충남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체류와 활동범위에 대하여 바꾸려고 하더라도 외국인의 한국 체류 및 활동범위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인 출입국 관리법에 이미 규정되고 있음
- 따라서 출입국 관리법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거나 위반할 수 없음

● 충남 이주·동포국 설립 한계에 따른 방안제시

- 지방자치법 제2조 제3항¹⁵⁾에 따라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장은 충남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법은 상위법인 중앙정부차원에서의 규율을 따르고 있지만 지방자치법 제3장 제28조(조례)제1항¹⁶⁾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음
- 지방자치법 제29조(규칙)¹⁷⁾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조례 범위에서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음
- 이러한 규칙제정권은 헌법재판소법 제10조(규칙제정권) 제1항¹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방자치단체에 외국인의 체류에 관한 새로운 규칙에 따라 내부 규율과 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어야 함
- 이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주특별법의 제7조(제주특별법의 설치 등)¹⁹⁾과 같은 법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수한 지위를 부여하여야 함
- 외국인이 지역 정착과 지역 내 관리와 외국인과의 공존을 위한 노력으로 필요시 되고 있으며 외국인 증가에 따른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노력으로 국민과 외국인이 함께 빚어 나가야 함
- 이와 같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에 사무기구의 설치가 요구됨

참고자료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2021. 제39차 목요일대화: 체류 외국인 250만 시대, 경제 활력 제고와 공존을 위한 방안

국적법. 제5조. 귀화요건.

이남철. 2020. 국제이주와 외국인 노동정책. 넥슨미디어.

제주특별법. 2021. 제1조 목적, 제6조 설치, 제7조 제주 특별법의 설치 등.

지방자치법. 제 3장, 28조 조례, 29조 규칙.

충청남도 주민등록인구 통계. 2021년 2월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 현황.

충청남도. 2021.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출입국관리법. 제20조. 체류자격 외 활동.

통계청. 2019.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

하이코리아. 2021.

헌법재판소법. 제10조의2. 입법외건의 제출.

15)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 외에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따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16)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17)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18) 헌법재판소는 이 법과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 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19) ① 정부의 직할로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은 중전의 제주도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특수한 지위를 가진다.